

명예훼손과 관련된 대법원의 주요 판례

판례 1: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사례²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판례 2: 불명확한 서술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사례²¹⁾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판례 3: 피의사실공표, 사적인 개인의 신상공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사례²²⁾

- (1) 언론자유와 개인의 인격권간 법익의 충돌이 있을 경우 비교형량하여야 함을 지적하고,
- (2)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은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3) 한편, 수사기관이나 수사담당 공무원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그 공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직접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이나 수사담당 공무원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에 국한된다.
- (4) 그리고 언론매체가 공적인 인물이 아닌 자의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그의 신원을 명시하거나 초상을 보여주는 것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이유로 대중매체의 범죄사건

20)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공1991, 1682)

21)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공1997하, 3625)

22) 대법원 1998.7.14. 선고 96다17257판결(공1998하,2108)

보도가 “범죄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할 경우에 공공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는데,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

해설: 이 판례에서 나타난 대법원의 견해는 범죄보도가 사회적으로 일탈행위에 대한 경계(警戒)를 위한 것으로 목적이 공익적이지만, 보도를 통하여 범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공공적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범죄자나 범죄기업이 또 다른 범법대상자에게 접근하여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신상명세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를 보도함에 있어서 범죄자의 구체적인 신상명세를 밝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판례 4: 피의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이를 인용한 언론기관에 따라 상당 이유의 원리를 적용하여 면책여부를 결정한 사례²³⁾

(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 ①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 ②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 ③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① 공표목적의 공익성과 공표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② 담당검사가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보강수사를 하지 않은 채 참고인 측의 불확실한 진술만을 근거로 마치 피의자의 범행이 확정된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하였

23) 대법원 1999.1.26.선고 97다10215,10222판결(공1999상,330)

음.

(3) 보도의 진실성 여부의 판단 기준

신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경우, 그 보도내용이 진실인가의 여부는 기사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목과 본문의 크기 및 배치, 본문의 길이 등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일반 독자들이 보통의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통상 기사를 읽는 방법에 의하여 기사로부터 받을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혐의를 받고 있다."는 형식의 보도

"...혐의를 받고 있다."는 형식의 보도가 피의자의 범행사실을 단정하는 듯한 문구²⁴⁾를 사용하고 있고 그 피의사실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신문보도가 진실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5) 언론기관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취해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한계에 대해

①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

-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 보도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 특히 공적인물이 아닌 사인(私人)의 경우 가급적 익명을 사용하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② 수사기관과는 달리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조사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도 있다. 따라서 신문기자가 담당 검사로부터 취재한 피의사실을 그 진위 여부에 관한 별도의 조사 및 확인 없이 보도했으나 위 기사가 검사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행한 발표 및 배포 자료를 기초로 객관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기사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음.

(6) 인용보도한 언론에 대해

일간신문사의 기자가 타 신문사의 기사내용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만을 열람하고 별도의 취재없이 마치 자신의 직접 취재에 의하여 피의자의 범행이 확인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사를 게재한 경우, 일간신문에 있어서의 보도의 신속성이란 공익적인 요소를 고려

24) 신문 기사의 제목이 본문에 비하여 활자의 크기나 지면 면적이 훨씬 크고 피의자의 범행을 단정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본문의 내용 또한 피의자의 범행동기와 그가 누설한 회시기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피의자의 범행이 진실임을 전제로 수사당국이 수사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인 것처럼 검찰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경우

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함.

판례 5: 상당 이유의 원리를 적용한 사례²⁵⁾

의견, 논평의 경우에도 그 전제되는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명예의 훼손 여부도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자구의 판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한 당해 부분 전후의 문맥과 기사가 게재될 당시에 일반의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지 경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실시한 사례

판례 6: 부분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불인정한 사례²⁶⁾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 사례

판례 7: 의견이나 논평에 의한 명예훼손을 불인정한 사례²⁷⁾

“...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풍자만화의 경우 견해를 우회하여 표현한 것이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25)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공1999상, 458)

26)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공1999.12.1.(95), 2451)

27)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공2000.10.1.(115), 1925)

판례 8: 의견이나 논평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사례²⁸⁾

(1)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하
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
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
하여야 한다.”

(2) 의견이나 논평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
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3)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
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
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
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
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는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
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 ①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 ②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지,
- ③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
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 ④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차이를 두어야 하
며,

(5) 법익간의 비교형량에 있어서

- ①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

28) 대법원 2002.1.22.선고 2000다37524,37531판결 (공2002.3.15.(150),522)

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 ②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 ③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협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6)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적 존재의 경우

- ①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 ② 그러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